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37
----------	-----

2025. 6. 11.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2025. 5. 30.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가. 우리 구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격려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장기근속·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격려금품을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점차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및 객관성있는 공적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에 따라 이에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나. 출산 정책에만 편중된 現 복지 혜택을 양육환경 개선으로 확대·운영함으

로써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청소년의 스스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다.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

3. 주요내용

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격려금품 지급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

나.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범위를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친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동참하여 극복해나갈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다.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안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 관련, (안 제 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안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각 호’ 로 개정하는 것이 직무규정 등

“모두” 또는 “어느 하나” 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모두” 또는 “어느 하나” 를 생략하고, “다음 각 호의 ○○” 또는 “다음과 같다” 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정 조항은 여전히 현행 규정이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 규정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됨.

- 또한, 안 제3조제2항제4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개정사항과 동시에 약칭¹⁾의 삽입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8조에 위원회 규정을 약칭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는 개정의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는 장기근속·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일률적 지원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격려금품 지급 대상을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모범 또는 우수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출산정책에만 편중된 현재의 복지혜택을 양육환경 개선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직원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소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성장·학습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함.

나.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8조와 제77조에서는 지방

1)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규정함.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남구는 2008.1.4.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남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공무원 복지 혜택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공무원에게만 제공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자녀의 성장이나 학습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바우처를 공무원 본인 이외에 증빙이 어려운 가족에게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68조(사회보장)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537

제안연월일: 2025. 6. 11.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배제 또는 제한 범위에 관한 개정 조항은 규정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배제 또는 제한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u> 적용한다.</p> <p>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제8조에 따른 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u></p> <p>③ <u>구청장은</u> 구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 --- <u>소속 공무원에 대하여</u> ----- -----.</p> <p>② ----- ----- ----- <u>각 호</u>-----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u> ----- ----- -----</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u>----- ----- ----- -----.</p>	<p>제3조(적용범위) ① --- --- <u>소속 공무원에 대하여</u> ----- -----.</p> <p>②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u> ----- ----- -----</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u>----- ----- ----- -----.</p>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제8조에 따른 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8조에 규정한 구”를 “제8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정년·명예퇴직”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 관련 바우처 지원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제8조제1항 중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6조에서 규정한”을 “제6조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에서 규정한”을 “제7조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를 “행정국장으로 하고”로, “추천”을 “임명”으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 중 “강남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u> 적용한다.</p> <p>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제8조에 따른 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정하는 사람</p> <p>③ <u>구청장은</u> 구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p> <p>① ~ ③ (생략)</p> <p>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제8조에 규정</u>한 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p>	<p>제3조(적용범위) ① ----- <u>소속 공무원에 대하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u> ----- -----</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u> ----- ----- -----.</p> <p>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제8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u> ----- -----.</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p>

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8. ~ 10. (생략)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
램 운영
12. ~ 20. (생략)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
체로서 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행) -----

-----.

1. ~ 6. (현행과 같음)
7.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
퇴직 -----
--
8. ~ 10. (현행과 같음)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
관련 바우처 지원 및 가족친
화 프로그램 운영
12. ~ 20. (현행과 같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
----- 위하여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 -----

3. 제7조의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

4. -----
----- 회의에 부치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 행정국장으로 하고-----

-- 임명 -----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구청장은 강남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 구의회 -----

--.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7
----------	-----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총무과

1. 제안이유

가. 우리 구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등
에 대하여 격려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장
기근속·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격려금품을 누구나가 납
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여 점차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지속
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및 객관성있는 공
적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에 따라 이에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나. 출산 정책에만 편중된 現 복지 혜택을 양육환경 개선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청소년의 스스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다.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

2. 주요내용

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격려금품 지급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함.

(안 제7조)

나.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범위를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친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동참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

(안 제7조)

다.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

(안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 4. 25. ~ 2025.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에 따른 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8조에 규정한 구”를 “제8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정년·명예퇴직”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 관련 바우처 지원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제8조제1항 중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제6조에서 규정한”을 “제6조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에서 규정한”을 “제7조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를 “행정국장으로 하고”로, “추천”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 중 “강남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u> <u>게</u> 적용한다.</p> <p>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제8조에 따른 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정하는 사람</p> <p>③ <u>구청장은</u> 구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p> <p>① ~ ③ (생략)</p> <p>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제8조에</u> <u>규정한 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구청장이 정한다.</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p>	<p>제3조(적용범위) ① ----- <u>소속</u> <u>공무원에 대하여</u> ----- -----.</p> <p>② ----- ----- <u>각</u> <u>호</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u> - ----- -----</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u> ----- -----.</p> <p>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제8조의 서울특</u> <u>별시 강남구 공무원</u> ----- -----.</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p>

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 8. ~ 10. (생략)
-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 12. ~ 20. (생략)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행) -----

-----.

- 1. ~ 6. (현행과 같음)
- 7.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 퇴직 -----
--
- 8. ~ 10. (현행과 같음)
-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 관련 바우처 지원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12. ~ 20. (현행과 같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
----- 위하여 -----

-----.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제6조의 -----

- 3. 제7조의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

4. -----
----- 회의에 부치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 행정국장으로 하고-----

-- 임명 -----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구청장은 강남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 구의회 -----

--.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서정민(02-3423-5182)